

The Guidebook for Open Government



정보공개 업무편람

목 차

I.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 개념
2.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 연혁
4. 정보공개 원칙

II.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2. 정보공개 청구권자
3.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4. 기타 청구처리
5. 불복구제 절차

III. 사전정보공표목록

IV. 비공개 대상정보

V. 수수료

I

정보공개제도 개요

01 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

02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03 정보공개제도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2003. 12. 23)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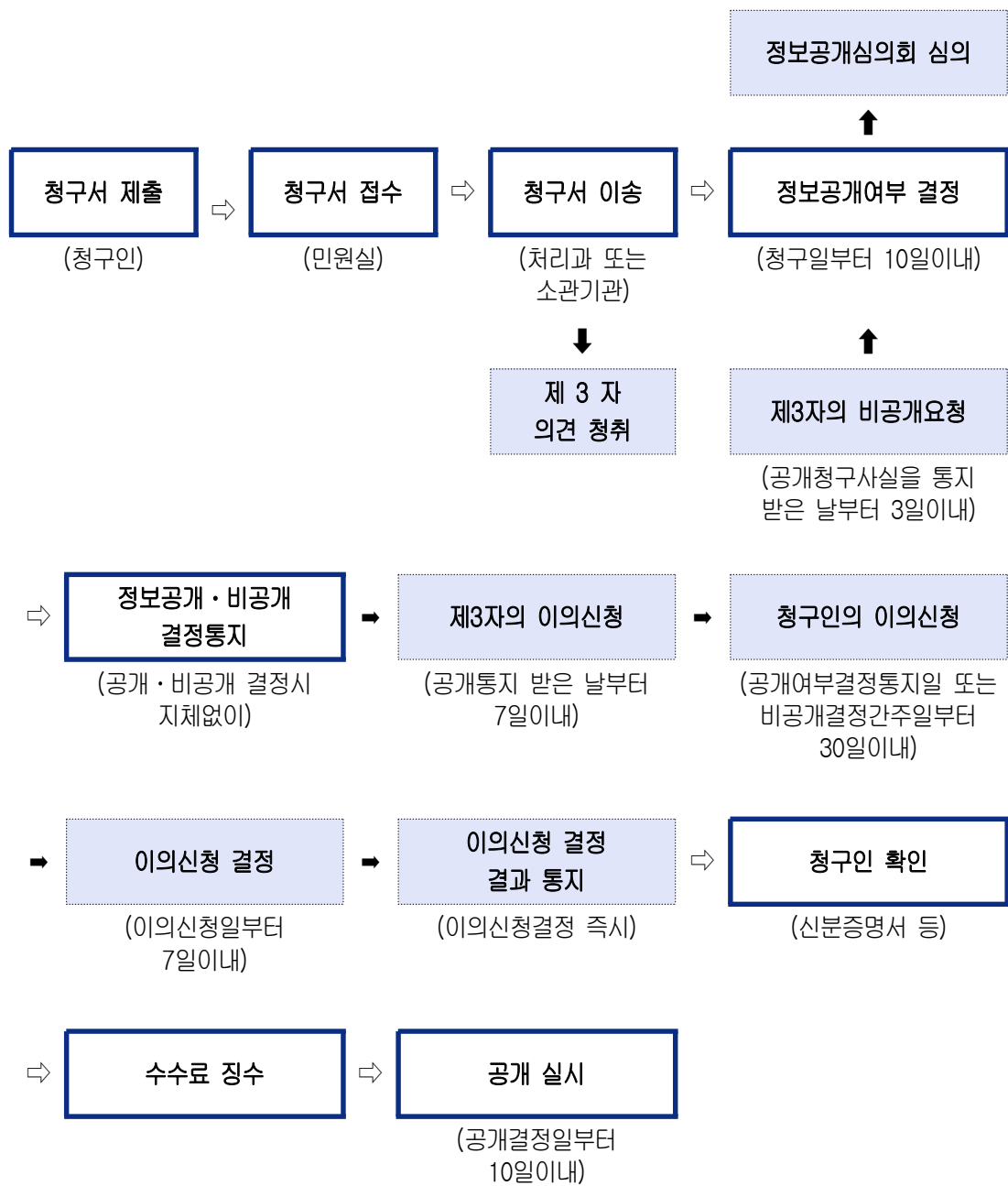
04 정보공개 원칙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법 제4조 제1항)

Ⅱ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0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02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자연인, 법인·단체, 미성년자, 수형인 등 포함)
 -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03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법률상의 규정(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관보, 신문·잡지·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04 기타 청구처리

1) 정보부존재 결정

- 정보부존재 처리기준
 -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등 청구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민원 처리에 따라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
 - 부존재 통지는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은 아니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 정보부존재 유형별 판단기준

-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단, 부서별 관리정보인 경우는 해당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2) 종결처리

-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부존재 등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자체 종결처리
- 종결처리시, 해당 청구의 취지나 목적 등을 중심으로 ‘동일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3) 타기관 이송

-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해당 기관으로 청구 건을 즉시 이송하여 처리
- 청구내용 중 일부 정보만 타 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동시처리’ 기능 이용

05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Ⅲ

사전정보공표목록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방 법	시 기	주 기	담당부서명
1	감사·윤리	청렴교육 현황	콘텐츠	12월	연 1회	감사실
2	감사·윤리	옴브즈만 운영 현황	콘텐츠	발생시	수시	감사실
3	감사·윤리	감사계획	홈페이지	1월	매년	감사실
4	감사·윤리	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콘텐츠	반기말익월 15일 이내	반기	감사실
5	감사·윤리	공직기강 감찰결과	홈페이지	6월/12월	반기	감사실
6	감사·윤리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익년도 1월 이내	연 1회	감사실
7	감사·윤리	범죄유형별 형사처분 임직원 현황	콘텐츠	익년도 1월 이내	연 1회	감사실
8	감사·윤리	고충·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콘텐츠	익년도 1월 이내	연 1회	감사실
9	감사·윤리	반부패 경쟁력 추진 현황	홈페이지	발생시	연 1회	감사실
10	감사·윤리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홈페이지	발생시	연 1회	감사실
11	감사·윤리	종합청렴도 평가	콘텐츠	발생시	연 1회	감사실
12	감사·윤리	청렴도 조사 결과	콘텐츠	발생시	연 1회	감사실
13	감사·윤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홈페이지	변경시	수시	감사실
14	감사·윤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콘텐츠	변경시	수시	감사실
15	감사·윤리	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콘텐츠	변경시	수시	감사실
16	감사·윤리	청렴마일리지 운영 현황	콘텐츠	매년 12월	연 1회	감사실
17	감사·윤리	협력업체 행동강령	콘텐츠	발생시	수시	재무정보팀
18	기획·재정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홈페이지	발생시 (수정시)	연 1회	혁신기획실
19	기획·재정	각종 기금운용계획	콘텐츠	발생시	수시	재무정보팀
20	기획·재정	부서별 주요 계획	콘텐츠	연초	매년	혁신기획실
21	기획·재정	정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2월	매년	콘텐츠	혁신기획실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시 기	주 기	방 법	담당부서명
22	기획·재정	내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완료 후	매년	콘텐츠	혁신기획실
23	기획·재정	기관 관련 주요 법령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혁신기획실
24	기획·재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결과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25	기획·재정	국비보조 및 정부보조사업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26	기획·재정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27	기획·재정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28	기획·재정	기관 업무보고 자료	연초	연 1회	콘텐츠	해당부서
29	법무·노무	사규 현황	개정시	수시	홈페이지	혁신기획실
30	법무·노무	사회공헌 활동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노무복지팀
31	법무·노무	법률고문 현황	1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32	법무·노무	노사 협의회 현황	분기말익월 15일 이내	분기	콘텐츠	노무복지팀
33	법무·노무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노무복지팀
34	인사·총무·회계	채용통계	12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35	인사·총무·회계	청사현황 및 시설사용 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홍보팀
36	인사·총무·회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반기말 익월 10일 이내	반기	콘텐츠	총무홍보팀
37	인사·총무·회계	정보공개 공개 및 비공개 목록	반기말 익월 10일 이내	반기	콘텐츠	총무홍보팀
38	인사·총무·회계	시청각기록물 보유현황	12월	매년	홈페이지	총무홍보팀
39	인사·총무·회계	단위과제 목록	변경시	수시	콘텐츠	총무홍보팀
40	인사·총무·회계	대외 포상 수상내용	12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41	인사·총무·회계	법인카드 관리 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42	인사·총무·회계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익월 10일 이내	매월	홈페이지	총무홍보팀
43	인사·총무·회계	사전정보공표목록	12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44	인사·총무·회계	민원 주요 Q&A	자료업데이트 후 20일 이내	수시	홈페이지	전체부서
45	인사·총무·회계	민원처리 절차	익년도 1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46	인사·총무·회계	전용차량 운영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재무정보팀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시 기	주 기	방 법	담당부서명
47	인사·총무·회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발생시	매년	콘텐츠	노무복지팀
48	인사·총무·회계	청사 에너지관리 현황	3월	매년	콘텐츠	안전관리실
49	인사·총무·회계	부서장 해외출장 내역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50	인사·총무·회계	수의-공사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1	인사·총무·회계	수의-용역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2	인사·총무·회계	수의-물품구매/수리 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3	인사·총무·회계	수의-물품제작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4	인사·총무·회계	발주계획 - 공사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5	인사·총무·회계	발주계획 - 용역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6	인사·총무·회계	발주계획 - 물품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7	인사·총무·회계	발주계획(사전등록)	6월, 12월	반기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8	인사·총무·회계	대금지급 - 공사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59	인사·총무·회계	대금지급 - 용역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0	인사·총무·회계	대금지급 - 물품구매/수리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1	인사·총무·회계	대금지급 - 물품제작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2	인사·총무·회계	입찰-공사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3	인사·총무·회계	입찰-용역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4	인사·총무·회계	입찰-물품구매/수리 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5	인사·총무·회계	입찰-물품제작계약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66	법무·노무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	1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67	인사·총무·회계	협력업체 상벌심의 결과	1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68	인사·총무·회계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1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69	인사·총무·회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1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70	인사·총무·회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1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71	인사·총무·회계	세금납부 현황	2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72	인사·총무·회계	자산관리 현황	2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73	인사·총무·회계	공통자재 단가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시 기	주 기	방 법	담당부서명
74	인사·총무·회계	계약심사 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75	인사·총무·회계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해당부서
76	인사·총무·회계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해당부서
77	인사·총무·회계	수익시설물 및 이용료 현황	상반기	연1회	콘텐츠	해당부서
78	인사·총무·회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12월	매년	콘텐츠	노무복지팀
79	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방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80	정보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변경시	수시	콘텐츠	재무정보팀
81	정보화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재무정보팀
82	정보화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계획	발생시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83	정보화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84	정보화	공공앱 성과측정결과	12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85	정보화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정보팀
86	정보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재무정보팀
87	정보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기준	발생시	수시	콘텐츠	재무정보팀
88	홍보·대외협력	홍보자료 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홍보팀
89	홍보·대외협력	광고비 집행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총무홍보팀
90	홍보·대외협력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해당부서
91	홍보·대외협력	홍보용품 제작 현황	12월	매년	콘텐츠	해당부서
92	홍보·대외협력	각종 공모전 개최현황	6월, 12월	반기	콘텐츠	해당부서
93	안전	국가안전대진단	4월	매년	콘텐츠	안전관리실
94	재난안전	영종도시기반사업단 영화칼슘 사용량 공개	발생시	수시	콘텐츠	영종도시기반
95	생활시설	지하도상가 시설물안전점검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96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10일 이내	분기별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97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98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묘지시설 이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99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100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시 기	주 기	방 법	담당부서명
101	생활시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관리료 납부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가족공원사업단
102	생활시설	송도도시기반사업단 일반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송도도시기반사업단
103	생활시설	송도도시기반사업단 제설위치도	발생시	수시	콘텐츠	송도도시기반사업단
104	생활시설	지하도상가 일반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105	생활시설	지하도상가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106	생활시설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107	생활시설	공단운영 공영주차장 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108	생활시설	공단운영 주차장 금지별 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상가주차사업단
109	문화시설	노인종합문화회관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종합문화회관
110	문화시설	노인종합문화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종합문화회관
111	문화시설	노인종합문화회관 생활체육사업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종합문화회관
112	문화시설	근로자문화센터 시설물 사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113	문화시설	근로자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분기별	연4회	홈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114	문화시설	근로자문화센터 임대아파트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115	문화시설	사회복지회관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사회복지회관
116	문화시설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사회복지회관
117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	상반기	연1회	홈페이지	청소년수련관
118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사업	상반기	연1회	콘텐츠	청소년수련관
119	문화시설	인천어린이과학관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어린이과학관
120	문화시설	인천어린이과학관 교육프로그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어린이과학관
121	문화시설	인천어린이과학관 소식지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어린이과학관
122	문화시설	인천어린이과학관 도서목록	발생시	수시	콘텐츠	어린이과학관
123	문화시설	하늘문화센터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하늘문화팀
124	문화시설	하늘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하늘문화팀
125	문화시설	하늘문화센터 수질정보	발생시	수시	콘텐츠	하늘문화팀
126	공원시설	송도센트럴파크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송도공원사업단
127	공원시설	송도센트럴파크 수목수종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송도공원사업단

연 번	분 야	공표목록	시 기	주 기	방 법	담당부서명
128	공원시설	송도센트럴파크 수질정보	발생시	분기	콘텐츠	송도공원사업단
129	공원시설	씨사이드파크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영종공원사업단
130	공원시설	씨사이드파크 시설이용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영종공원사업단
131	공원시설	씨사이드파크 수목수종현황	2월	매년	콘텐츠	영종공원사업단
132	공원시설	씨사이드파크 수질정보	발생시	수시	콘텐츠	영종공원사업단
133	공원시설	청라호수공원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청라사업단
134	공원시설	청라호수공원 수목수종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청라사업단
135	공원시설	청라호수공원 수질정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청라사업단
136	공원시설	청라호수공원 숲교실 운영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청라사업단
137	체육시설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138	체육시설	아시아드주경기장 프로그램 안내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139	체육시설	아시아드주경기장 월별 행사일정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140	체육시설	아시아드주경기장 입점업체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아시아드주경기장
141	체육시설	인천아시아드기념관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142	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삼산월드체육관
143	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 운영프로그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삼산월드체육관
144	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 월별 행사일정	발생시	매월	홈페이지	삼산월드체육관
145	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 입점업체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삼산월드체육관
146	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 수질정보	발생시	수시	콘텐츠	삼산월드체육관
147	체육시설	계산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계산체육팀
148	체육시설	계산국민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계산체육팀
149	체육시설	계산국민체육센터 수질정보	발생시	수시	콘텐츠	계산체육팀
150	체육시설	계양경기장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계양경기장
151	체육시설	계양경기장 월별 행사일정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계양경기장
152	체육시설	계양경기장 입점업체 현황	발생시	수시	콘텐츠	계양경기장
153	체육시설	강화경기장 시설현황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강화경기장
154	체육시설	강화경기장 행사일정	발생시	수시	홈페이지	강화경기장

IV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0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요 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

● 대표적 사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II·III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0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 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 대표적 사례

- 대북한 관련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0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 대표적 사례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0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요 건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대표적 사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05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대표적 사례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희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규제관련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0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 성별, 학력, 직업, 재산상황 등)

● 대표적 사례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연가·병가 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함.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07 법인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대표적 사례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표적 사례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V

수수료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